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551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551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9가단33043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이승현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1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9가단3304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C이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창원지방법원 2019카합10061호 채권가압류 상의 채권 금액 554,359,655원에 관하여 2019. 2. 26.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20,35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359,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원상회복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상회복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항소이유에 맞추어 제3항과 같이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대체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0,359,135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E이 배당포기신청을 하였음에도, 창원시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금제1633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40,330,500원이 2019. 7. 18. 피고 명의 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93,347,8961) 원이 같은 날 F 명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F에게 입금된 금액 중 1억 원이 같은 달 24. E 감사 P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 금액 중 140,330,500원을 이미 수령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359,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이 사건 채권 자체의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 판사 정일예

1) 소득세와 이자 등으로 인해 공탁금 원금과 차이가 있다.